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84

발의연월일: 2025. 4. 21.

발 의 자:복기왕·윤건영·양부남

이광희 • 이정문 • 이원택

민병덕 • 이연희 • 김현정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안전시설의 예시로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안전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이탈 및 구조물과의 직접적 충돌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임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이 아닌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그 밖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도심 내 일반도로에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최근 자동차가도로를 벗어나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방호울타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설·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과속방지시설 등"을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보도의"를 "제1항에 따른 보도의"로, "등에"를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등에"로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 후 새로 설치되는 보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	2			
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	나			
대, <u>과속방지시설 등</u> 도로	<u>과속방지</u>			
안전시설	<u>시설, 방호울타리 등</u>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도로관리청은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 후 새로 설치되			
	는 보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2	보도의	설치	기준,	구	<u> </u>	등
<u>에</u>	관하여	필요학	한 사형	하은	국	토
亚马	통부렁으	.로 정	한다.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도의-							
<u>및</u>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등에						